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96,801,592	11,904,048
일반회계	370,639,660	11,119,190
특별회계	26,161,932	784,858
기타특별회계	26,161,932	784,85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767,481	203,024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817,424	24,523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	470,462	14,114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863,989	25,92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5,045	3,151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4,628,255	138,84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3,657,774	109,733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215,490	36,465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7,636,012	229,0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597,33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